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10년 9월 7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조일연)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편익시설물인 “교통상황 정보 안내시설물” 에 대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 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 관련 수수료 현실에 맞게 개선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편익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여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광고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와 비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수방법을 세분화하여 명확성과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함.(안 별표 3·4)

-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및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 등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기하도록 개정함.(안 별표 7)
- 개인정보의 보호, 서식의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 설계기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함.(안 별지 3·5·6·7·10·11·12·14·15·16)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편익 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며, 징수방법을 세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따른 계산방법을 명시토록 하며
-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법규상의 서식 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 호
----------	--------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관련한 서울시의 협조 요청 및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10조 제2호 신설

-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

나. 수수료 산정금액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고 징수방법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았으나,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 시 명확성과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7).

-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수수료 조정 및 징수방법 세분화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조정 및 징수방법 세분화
-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명시

다.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 범규상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함.(안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0.7.8 ~ 7.28)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

별표 3, 별표 4,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형 간판 (가로형·세로형)		개	· 6제곱미터 이하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삭제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제1호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 제6호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1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2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제5호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제6호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13,000
			· 5제곱미터 초과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선박		대		10,000
다.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1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1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5. 벽 보		매	· 2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삭제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 제3항 관련)
- (3)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내부 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 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2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45,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3. 삭제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영 제23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5. 삭제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4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45,000
	· 연면적 8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5. 기타 광고물등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가.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총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면적산정 비율은 게시시설 면적의 2분의 1로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 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6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
		1개당5만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0만원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50만원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8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가로형간판에 준함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편		
익시설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기목 내지 리목외의 공공시설물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3) 입체형 또는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제21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류 종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격 규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내	사 용			
검 의	사 견			
안 전 도	합 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①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 (시설 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25조제4항 관련)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p>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p>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p>성 명 영등포구</p>
--

54mm x 86mm 【PVC(비닐)980.4g/m²】

(주) 바탕색은 연녹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후 면>

<뒤 쪽>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p> <p>자격기한(20 ~ 20)</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p> <p> 년 월 일</p> <p>영등포구청장 직인</p>

[별지 제10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제28조제4항 관련)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영 제41조제6항 관련)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 사유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제31조제4항 관련)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p>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31조제6항 관련)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소			
교육계획	⑥일시			
	⑦장소			
⑧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32조제1항 관련)		30 일	
신 청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 구비서류		수 수 료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영등포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제32조제2항 관련)			
수 탁 자	①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직인</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별표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p>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현행과 같음)</p> <p>2.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p> <p>【별표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옥외광고물</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광고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25%;">기 준</th> <th style="width: 20%;">수 수 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6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r> <tr> <td rowspan="2">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20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r> <td>·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rowspan="2">2. 세로형 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6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r> <tr> <td rowspan="3">3. 돌출간판</td> <td rowspan="3"></td> <td rowspan="3">개</td> <td>· 3.5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r> <tr> <td>·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r> <tr> <td rowspan="2">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u>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u></td> <td></td> </tr> <tr> <td>· <u>지주이용간판과 같음</u></td> <td></td> </tr> <tr> <td>나. 지주이용간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5. 옥상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10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r> <td>·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r> </tbody> </table>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3,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u>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u>		· <u>지주이용간판과 같음</u>		나. 지주이용간판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광고물의 종류</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25%;">기 준</th> <th style="width: 20%;">수 수 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가. 일반간판 (가로형·세로형)</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6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r> <tr> <td rowspan="2">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20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r> <td>·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colspan="5">2. 삭제</td> </tr> <tr> <td rowspan="3">3. 돌출간판</td> <td rowspan="3"></td> <td rowspan="3">개</td> <td>· 3.5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r> <tr> <td>·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r> <tr> <td rowspan="2">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제1호 가로형간판 <u>가항과 같음</u></td> <td></td> </tr> <tr> <td>· 제6호 지주이용간판 <u>과 같음</u></td> <td></td> </tr> <tr> <td>나. 지주이용간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5. 옥상간판</td> <td rowspan="2"></td> <td rowspan="2">개</td> <td>· 10제곱미터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r> <td>·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body> </table>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가. 일반간판 (가로형·세로형)		개	· 6제곱미터 이하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삭제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제1호 가로형간판 <u>가항과 같음</u>		· 제6호 지주이용간판 <u>과 같음</u>		나. 지주이용간판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3,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u>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u>																																																																																																								
			· <u>지주이용간판과 같음</u>																																																																																																								
나. 지주이용간판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가. 일반간판 (가로형·세로형)		개	· 6제곱미터 이하	4,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삭제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 제1호 가로형간판 <u>가항과 같음</u>																																																																																																								
			· 제6호 지주이용간판 <u>과 같음</u>																																																																																																								
나. 지주이용간판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4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현행				개정안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20,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2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20,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20,000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제5호 옥상간판에 준합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합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13,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13,000
			· 5제곱미터 초과	15,000				· 5제곱미터 초과	15,000
10.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10.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다. 옥상간판	대			2,000	다. 옥상간판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u>6,000</u>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u>10,000</u>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1,500</u>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2,000</u>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10,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1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5. 벽보	매		· <u>50매당</u>	5,000	15. 벽보	매		· <u>20매당</u>	5,000
16. 전단	매		· 1,000매당	5,000	16. 전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이용 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7. 삭제				

현 행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홍보탑 광고		개		2,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3.5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생략)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 (2) (생략)

〈 신 설 〉

【별표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개 정 안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홍보탑 광고		개		2,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3.5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현행과 같음)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별표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현 행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용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1,000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38,000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000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 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14,000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4,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0,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4 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 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 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11,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신 설 〉

개 정 안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용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 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 하는 판류이용 가로형 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45,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2,000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3. 삭제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영제 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5. 삭제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40제곱미터 미만	22,000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미만	45,000
	· 연면적 8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
하되, 면적산정 비율은 게시시설 면적의 2분의 1로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1. ~ 6. (생략)		

< 신 설 >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부과기준	부과금액
1. ~ 6. (현행과 같음)		

-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3) 입체형 또는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